## 예산총칙

**제1조**: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 천원)

	<b>ই</b>	계	별		세입.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		계			292,333,219	8,769,997
1.	일	반	회	계	284,935,722	8,548,072
2.	E <sub>1</sub>	별	ই	계	7,397,497	221,925
	의 료	보 .	호 기	그	739,646	22,189
	주민소득.	지원 및	생활안정	기금	357,896	10,737
	주	차		장	4,990,814	149,724
	주 거 흰	· 경 기	l 선 사	. 업	162,147	4,864
	발 전 소 즉	주 변 지 9	격 지 원 /	사 업	490,921	14,728
	기 반	시	철 사	어	354,612	10,638
	지 하	수	관	리	297,561	8,927
	재 정	月	축	진	3,900	117

제2조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700,000천원이다.

제6조: 일반회계 예비비는 4,571,598천원으로 한다.

**제7조:**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8조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보조금 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보고한다.